

2025년도 중소기업(소상공인) 운전자금(이차보전금) 용자계획 공고

「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14조에 따라 2025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(소상공인) 운전자금(이차보전금) 용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1. 13.

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

1. 용자추천 규모 및 용자은행 : 126억원

- 중소기업 : 100억원
- 소상공인 : 26억원 [특례보증 18억원, 일반(부동산)보증 8억원]
- 협약은행 : 기업은행, 신한은행, 국민은행, 하나은행

2. 지원 대상

- 중소기업
 - 부평구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율 30% 이상의 제조업체

전업율(제품매출/총매출×100) 30% 이상인 기업

- 공장건축면적 500㎡이하 기업은 건축물 관리대장의 용도가 공장, 제조업소 등이면 가능
- 소상공인 : 부평구 소재

3. 용자추천 한도 및 용자조건

구 분	용자추천 한도	용 자 기 간	이자차액보전
중소기업	4억원 이내	· 2년(일시상환) · 3년(1년 거치 2년 4회 균등분할 상환) · 4년(1년 거치 3년 6회 균등분할 상환) · 5년(2년 거치 3년 6회 균등분할 상환) ↳ 관외전입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한함	1.5~2.5%
소상공인	3천만원 이내	· 5년(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)	3.0%

※ 운전자금 업체별 한도액 잔액이 남은 업체는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

○ 대출금리 : 시중 자율금리(고정 및 변동 금리는 기업체 자율선택)

○ 대출신청 유효기간 : 용자추천 결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

※ 1회에 한해 15일 연장 가능하나 차기 용자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음

<중소기업> ※이자차액 보전이율의 총합은 2.5%를 초과할 수 없음

보전이율	지 원 조 건
1.5%	이자차액보전이율 상향 대상이 아닌 기업 인천광역시 및 부평구 운전자금 수혜기업(최근 5년 이내)
2.0%	연매출 10억원 이하 및 상시근로자수 10인 이하 소기업(자가공장 소유업체 적용 제외) 설립 3년 미만의 창업기업(연매출액 10억 이상일 경우 적용 제외) 부평구 관내 경제단체 가입한 기업(기업체 대표가 참여하는 경우) [(사)부평구중소기업협의회, 부평구경영자협의회, (사)중소기업융합 인천부천김포연합회] 「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여성기업 「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」에 의한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(고용노동부 인증 지정업체) 부평구 구민상(산업증진분야) 및 중소기업인상(경영·기술) 수상기업(최근 3년 이내) 녹색제품인증 제조기업(환경부 한국산업기술원 및 자원순환협회 지정) 제조업 관련 우수 기술개발업체 [특허·실용신안 등록 완료 2건 이상, 신기술(NET)·신제품(NEP) 1건 이상 받은 기업] 인천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, 비전기기업 등 중소기업청,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정 유망 중소기업 수출기업(수출계약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) 소재·부품·장비전문기업(최근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지정업체)
2.3~2.5%	2024.1.1.이후에 부평구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거나 창업한 업체 • 매출액 10억 미만 기업 : 2.3% • 매출액 10억 이상 기업 : 2.5%
추가보전이율 0.5%	재해 및 화재의 피해를 입은 기업(피해 복구기간 지원) 코로나19 및 국가지정 감염병으로 인한 조업중단·수출입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 2024.1.1.이후에 부평구에 200만원 이상 지정기부한 기업 (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지원) 2024.1.1.이후에 신규로 부평구민을 2명 이상 채용기업(1년 이상 고용 시) 부평구에 공장을 등록한 후 20년 이상 운영한 장수기업 2024.1.1.이후 만65세 이상의 고령자를 1명이상 채용한 기업 출산 지원기업(2024년도 출산 축하 비용 및 출산 부조금 등 복리후생비 지원 기업)
3.0%	부평구 소재 소상공인

※ 고용조건으로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는 경우, 지원 기간 동안 고용 조건을 유지하여야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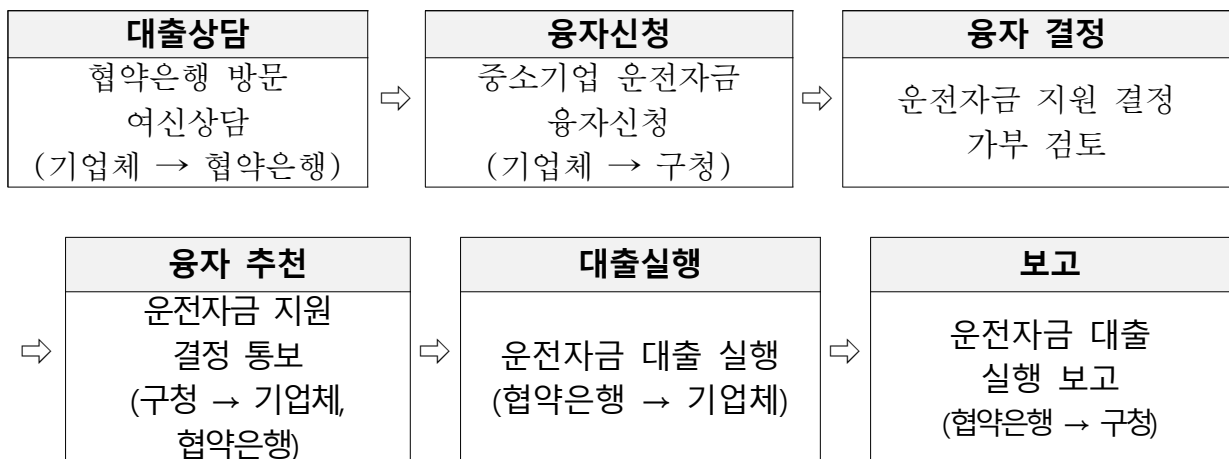
- ※ 출산 지원기업은 기업의 복리후생비 중 출산장려 정책에 부합하는 경비(출하 비용 및 출산 부조금 등)를 지출하고 재무제표 및 계정별 원장에 등재하여 이를 증빙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(전년도 실적에 한함)

4. 지원제외 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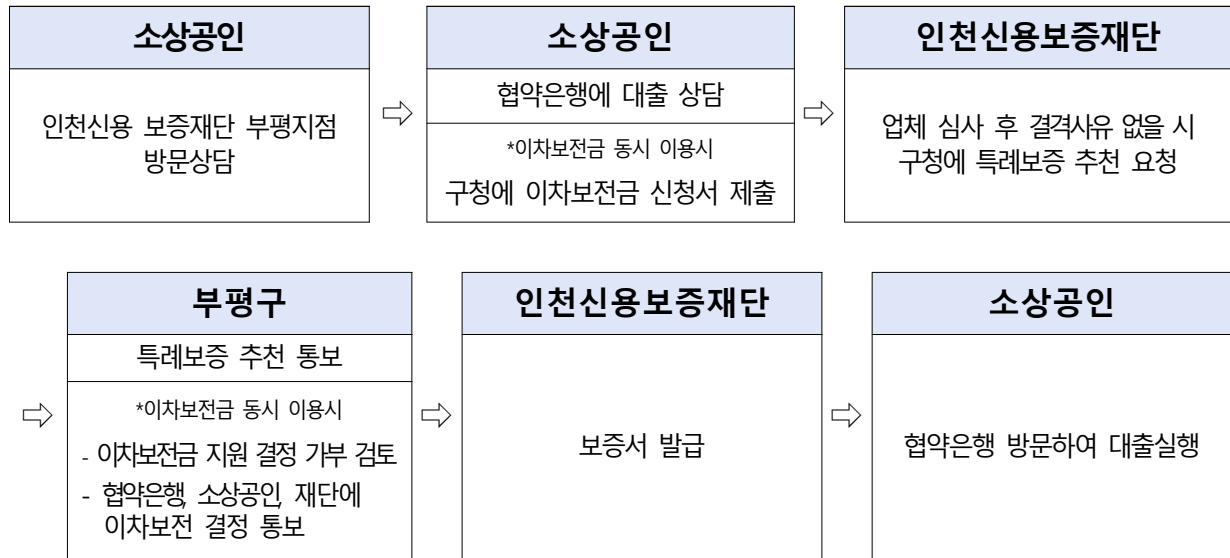
구 분	지원제외 사유
중소기업	○ 부평구로부터 운전자금 융자 지원을 받고 상환중인 기업으로 한도액 잔액이 남아있지 않은 기업 ○ 무등록 공장(공장건축면적 500㎡ 이상인 업체에 한함) ○ 제조업 전업율 30% 미만인 업체 ※ 중소기업은 인천시 자금 중복 수혜 시 특별 우대 없이 이차보전요율 1.5% 적용
소상공인	○ 인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
공통사항	○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○ 휴·폐업중인 기업 ○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○ 사치·향락 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

5. 신청 및 접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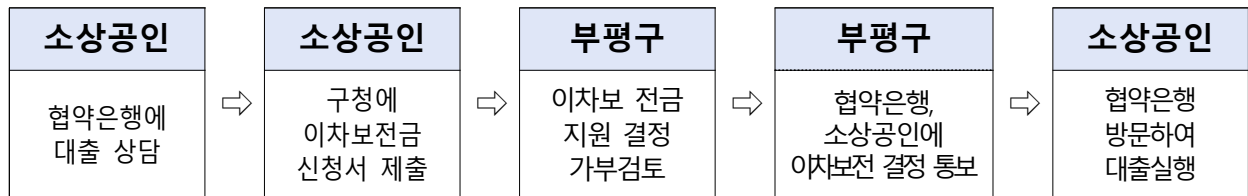
- 신청기간 : 2025. 1. 13(월). ~ 자금 소진 시 까지
-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(비즈오케이 <http://bizok.incheon.go.kr>)
- 지원절차
 - 중소기업



- 소상공인(특례보증)



- 소상공인(일반보증)



○ 접수기관 :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경제지원과(6층)

○ 문의안내 : ☎ 032-509-6572(중소기업), ☎ 032-509-6568(소상공인)

6. 제출서류

가. 중소기업

구 분	서류 및 요건	
운전자금 지원신청서 (중소기업) 및 사용계획서	[서식 1]	
운전자금 이차보전금 반환 이행각서	[서식 3]	
사업자등록증		
재무제표	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(홈텍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)	
업종증빙서류	제조업	제조면적 500㎡이상: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㎡미만: 건축물대장
	제조관련업	등록증 및 인·허가증
국세·지방세증명서	완납증명서	
우대조건증명서류	해당 우대조건 증빙서류	

나. 소상공인

구 분	서류 및 요건
운전자금 지원신청서 (소상공인) 및 사용계획서	[서식 2]
운전자금 이차보전금 반환 이행각서	[서식 3]
사업자등록증	
부가가치세 서류	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
국세·지방세증명서	완납증명서
기타 증빙서류	

7. 우대조건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

구 분	제 출 서 류
여성기업	여성기업 확인서(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발급)
장애기업	장애인기업 확인서(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)
사회적기업	사회적기업 인증서(고용노동부 인증)
부평구 중소기업인상 및 구민상(산업증진 분야) 수상기업	수상관련 증빙자료(최근 3년 이내)
부평구 관내 경제단체 가입 기업	부평구 관내 경제단체 가입 증빙자료
우수 기술개발업체	신기술(NET), 신제품(NEP) 인증서, 특허증, 실용신안등록증 등
녹색제품인증 제조기업	환경표지제품 인증서(환경부 한국산업기술원 인증)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(지원순환산업진흥협회 인증)
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	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 확인서(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인증)
수출기업	수출실적증명서(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), 수출계약서류 등
비전·유망기업	인천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중소기업청,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
부평구 전입기업	법인 : 법인등기부등본 1부 (이전날짜 표기) 개인 : 사실증명원 1부 (이전날짜 표기, 세무서 발급)
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	
기부기업	부평구 지정기탁 기부확인서(2024.1.1.이후)
고용기업	고용사실 증빙자료(2024.1.1.이후) - 고용보험료 월별 납부 자료,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고용인원 확인 가능 서류 - 고용인원 거주지 증빙자료 - 기타 고용사실을 증빙하는 자료
재해기업	재해기업 확인증(중소기업청 고시) 화재사실 증명서(소방서, 보험회사 발급) 코로나19 피해기업 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(별첨3, 별첨4 참조)

8. 유의사항

- 운전자금 이차차액지원사업은 협약은행에 용자 추천을 하여 협약은행의 자금을 용자하는 것으로 협약은행에서 부동산 담보, 보증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자 추천 대상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여신 규정에 의한 채권 보전이 어려울 때는 협약은행으로부터 용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
- 대출금리는 은행별 심사기준과 신용에 따라 금리가 상이하므로 협약은행의 금리를 신중히 검토하여 대출은행을 선택하기 바람
-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, **그 외 용도(부동산 구입, 개인채무 상환 등)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환수 조치됨**
- 업체명, 대표자, 사업장 소재지, 법인 전환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관련 서류를 대출은행과 구에 제출
- 용자 후 휴폐업 또는 부도, 타 시·군·구로 이전할 경우(본사 또는 공장)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됨
- 상환 기간 연장은 대출은행에서 가능하더라도 이차보전금 지원은 최초 신청 시 대출기간 내에 한함
- 추가보전이율(0.5%)은 해당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함
- 필요 시 용자금의 사용실태조사 및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<제조관련서비스업·지식기반서비스업·지식서비스업 범위>

제조업관련 서비스업

산 업 명	표준산업분류번호
도로화물 운송업	493
해상 운송업	501
항공 운송업	51
화물 취급업	5294
보관 및 창고업	5210
물류 터미널 운영업	52913
화물 운송 중개,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	52992
화물 포장,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	52993
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(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)	76390
산업설비,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	74212
폐기물 수집·운반업	381
(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포함)	(39009)
폐기물 처리업	382
폐수 처리업	37012

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

산 업 명	표준산업분류번호
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	62021
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58211
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58212
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58219
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58221
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58222
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	62010
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	63120
(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)	
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	63991
(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)	
물리,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	70111
농림수산업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	70112
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	70113
전기·전자공학 연구개발업	70121
기타 공학 연구개발업	70129
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	70119
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	70201
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	70209
시장 조사업(여론 조사업 제외)	71400
경영 컨설팅업	71531
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	39001
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	39009
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	72122
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	72129
제품 디자인업	73202
시각 디자인업	73203
패션,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	73209
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	72911
기타 기술 시험, 검사 및 분석업	72919
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	59111
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	59112
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	59113
방송프로그램 제작업	59114

지식서비스업

산 업 명	표준산업분류번호
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	74100
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	75991
전시,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	75992
포장 및 충전업	75994

※ 제조관련서비스업.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영위여부 확인

1) 제조관련서비스업.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설명에 따라 관련 등록증 및 허가증 등을 통해 업종영위 여부 확인필수

- 통계청>통계분류포털>한국표준산업분류>분류코드 검색

※ 세부업종에 따라 복수이상의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이 구비되어야 하는 산업도 있음

ex.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

(시설경비허가증, 위생관리용역업신고증,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등 중 2개이상 구비필수)

2) 등록증 및 허가증이 구비되지 않는 제조관련 서비스 산업의 업종일 경우 관련 매출의 확인을 통해 업종영위 여부 판단

- 해당 업종영위 관련 계약서류 확인

- 관련 매출액 확인 (세금계산서 확인)

※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(관련 매출)가 전체 매출의 30% 이상 충족하여야 함

ex. 포장 및 충전업 등